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. 6. 23 선고 2020가단140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

변론 종결2020. 5. 26.

판결 선고2020. 6. 2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0. 6. 18. 접수 제7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C 종중 소유 재산(총유재산)이라는 전제에서 그 사무국장으로

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.

그러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단체가 그 명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단체의 구성원 개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,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,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지희

별지